

회사의 물품대금채권 3억원 지급판결 후 무자력 + 대표이사의 자녀가 대표이사인 타 회사에 청구 - 불인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가단11375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A 회사에 대한 약 3억원 물품대금채권 지급 판결

(2) 채권자 원고가 피고 회사는 채무자 A 회사의 채무 면탈 의도로 설립되었다고 주

장하면서 피고에 대해 위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안

(3) 법원 판결 - 불인정,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와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부모와 자

녀 관계에 있고, 채무자 회사의 거래처 중 일부가 피고 회사의 거래처이기도 하며, 소외 회사의 직원 중 일부가 피고 회사로 이직하기는 하였으나, 채무자 회사와 피고 회사의 임금 내역 및 인적 조직 구성, 주요 자산 및 설비의 이전 여부,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소외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판결

2. 채권자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① 피고회사의 대표자 F이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 C, D의 자녀인 점, ② 소외 회사의 근무하였던 직원들 상당수가 피고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점, ③ 소외 회사에서 사용하던 집기 등 물품이 피고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 ④ 소외 회사에서 생산된 무늬, 패턴 등이 피고회사에서도 생산되고 있는 점, ⑤ 두 회사의 위치가 매우 근접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회사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설립된 회사이므로 피고회사는 법인격남용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

3. 법원 판결 요지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2)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참조).

(3)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사와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회사를 설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청구

기각 판결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가단113755 판결

기업법무, 기술법무, 벤처기업, 계약분쟁, 손해배상,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